

붙임1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

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

소통과 배려로
국민과 함께
하겠습니다.

수신자	귀하		
장기요양인정번호	(-)	장기요양등급	0등급

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. ※ 관련근거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개정('25년 7월 1일 시행)

따라서 귀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구분	유효기간
변경 전	0000.00.00 ~ 0000.00.00
변경 후	0000.00.00 ~ 0000.00.00

[주요 변경내용 안내]

인정등급	변경 전 유효기간		변경 후 유효기간	
1등급	갱신결과	4년	갱신결과	5년
2등급~4등급	동일 등급인 경우	3년	동일 등급여부와 무관	4년
유의사항	1.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같음합니다.			
	2. 변경 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 예정이었던 수급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 ※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가능			
	3.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,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맞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. (복지용구 포함)			
	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	별도 서류 없이 본 안내문만 제시 및 확인	
	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	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본 안내문 제시 및 확인	
4.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				
-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문의 후 내방 또는 우편 발송 신청				
- 인터넷 발급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				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문의

☎ 고객센터 1577-1000
☎ 관할 운영센터(운영센터) 000-000-00000

(이용요금: 발신자 부담)